

##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)를 둔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,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장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6. 산학협력단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7.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계약학과·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
9. 산학협력단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10. 기타 대학사업의 지원과 협력단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**제6조(소집 및 의결)**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 (수당 등)**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팀 팀장이 된다.

**제9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비밀의 엄수)**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부 칙(2003. 10. 1)

1.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